

오드(C₂H₅I)로서의 옥시에틸렌함량(%)을 구한 다음, 이들의 합계를 옥시에틸렌(-C₂H₄O-)의 함량으로 한다.

0.05N치오황산나트륨용액 1ml=1.1015ml C₂H₄O

0.05N치오시아암모늄용액 1ml=2.22025ml

C₂H₄O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고시는 1989.8.1부터 시행한다.

식품등의 규격및 기준개정

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, 제9조 제1항 및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1989. 5. 23

보 건 사 회 부 장 관

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

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제3.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중7. 성분규격 및 기준 4)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5)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으로하며 4) 식품중 방사능잠정허용기준과 6) 식품중 아플라톡신 잠정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) 식품중 방사능 잠정 허용기준

핵 종	대 상 식 품	기준(Bq / kg, l)
¹³¹ I	유 및 유가공품 기타식품	150 300
¹³⁴ Cs+ ¹³⁷ Cs	모든식품	370

6) 식품중 아플라톡신 잠정 허용기준

대 상 식 품	기 준
곡류, 두류, 땅콩 및 그 단순가공품(분쇄, 절단등)	10μg / kg 이하 (아플라톡신 B ₁ 으로서)

부 칙

이 고시는 1989. 8. 1 부터 시행한다.